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단913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4. 19.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8. 16.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이 추천하는 주식 종목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수익 달성 전 수수료 등 가입비는 요구하지 않고 수익 달성 후에 10%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 초기 투자금의 250%를 달성 전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ETF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추천해주겠다”라고 하며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여 주식을 매매하여 투자를 진행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2021. 8. 17.경부터 2021. 9. 23.경까지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7,610만 원 상당을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1. 7.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구글에서 C을 검색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카카오톡 채팅으로 6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21. 7. 초순경 충남 당진시 밤절로 149 당진공용버스터미널에서 경남 마산으로 향하는 버스를 이용해 피고 명의 우체국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전화통화를 통하여 해당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고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600,000원의 대출금을 받고 이를 매월 대출금액 일부를 상환한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하여 접근매체양도 등의 행위를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7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¹⁾

나.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6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소액대출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가 자신의 예금계좌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충남서산경찰서장은 2022. 1. 25. 피고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고가 본인의 변소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600,000원의 대출금을 받은 후 매월 대출 금액 일부를 상환한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성명불상자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16.자 소변경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소변경하였다.